

소방조직의 효과적인 생활안전서비스에 관한 연구

채진[†] · 우성천* · 고기봉**

경기도 소방학교, *강원대학교, **강원소방본부

A Study on the Fire Organization of the Effectiveness Life Safety Services

Jin Chae[†] · Seong-Cheon Woo* · Gi-Bong Go**

Gyeonggi Fire Service Academ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Gangwon Fire Headquarters

(Received August 22, 2013; Revised August 28, 2013; Accepted August 28, 2013)

요 약

최근 소방안전 서비스는 위협의 사전방지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안전 업무까지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생활안전의 이론적 탐색과 119생활안전대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소방공무원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소방조직의 효과적인 생활안전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활용,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과 시민의 지지 확보, 다조직간의 협력,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 구분, 생활안전 소방서비스의 사회안전망 역할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importance of fire safety services has increased expanding its services into prevention of danger and the reinforcement of safety servic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way for effective safety service by surveying fire fighters and residents of Gyeonggi Province and examining theories of safety services and actual status of 119 safety units. This study suggests the use of social capital by local community, establishment of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supports by citizens, cooperative activities by organizations, difference between emergency report and non emergency report and social safety net role of safety fire services.

Keywords : Fire department, Safety Service, Cooperation of Organizations

1. 서 론

소방조직은 화재뿐만 아니라 재난 등 국민생활에 있어 각종 위협으로부터의 안전과 대국민소방서비스를 제공하는 과거 어느 때보다 확장된 개념인 “소방”으로 인식되고 있다. 소방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한다면 소방기본법 제1조의 목적에 비추어볼 때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는 화재의 예방·경계·진압 및 재난 등 각종 위급한 상황에 있어서의 구조·구급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이처럼 소방조직은 화재의 예방·경계·진압이라는 화재 중심에서 사회가 발전하면서 구조·구급활동으로 그 업무의 영역을 넓혀갔으며, 최근에는 재난관리의 업무를 소방

조직에서 집행하고 있어 소방조직은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면서 발전해왔다. 현대조직은 급격한 환경으로부터 조직을 생존·성장·발전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환경에 적응하는 수준을 넘어 그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적인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의 생존전략 모색이 환경에 대한 적응 노력뿐만 아니라, 환경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¹⁾.

최근 소방안전 서비스는 위협의 사전방지와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생활안전 업무까지 확대되고 있다. 119로 접수되는 각종 생활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안전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방재청에서는 2012년부터 효과적인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을 위해 119생활안전대를

[†]Corresponding Author, E-Mail: korea119@gg.go.kr
TEL: +82-10-3766-0857, FAX: +82-31-339-2911

ISSN: 1738-7167
DOI: <http://dx.doi.org/10.7731/KIFSE.2013.27.4.47>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생활민원처리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와 호응도는 다른 소방안전 서비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원의 전문성 부족과 장비부족, 인센티브 등 많은 문제점이 들어났다. 119생활안전의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소방조직의 생활안전서비스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생활안전의 이론적 탐색과 119생활안전대의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 등을 바탕으로 조사설계를 하고, 소방공무원과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소방조직의 효과적인 생활안전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생활안전의 의미

생활안전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정의 되지 않고 있으며, 각 기관,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 하고 있다. 따라서 생활안전에 대한 각 기관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고 소방행정에 알맞은 생활안전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재은 · 유현정(2007)⁽²⁾은 생활안전을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명, 건강,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은 상태라고 정의 하고 있다. 생활안전의 영역으로 식품안전 영역, 보건/의약품안전 영역, 생활경제안전 영역, 생활환경 영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배대식(2009)⁽³⁾은 국민생활안전이란 국민의 일상생활과 정에서 국민들이 각자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육체적, 심리적 또는 물질적 위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과 상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정의 하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안전은 개인, 집단, 조직, 국가수준에서 안전의 의미는 사생활이나 개인의 인권과 자산을 타인이나 외부로부터 자유로우며 안심할 수 있는 상태나 상황을 의미하며, 집단이나 조직수준에서는 구성원의 권익과 자산이 보호되는 상태,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안전이 보장되는 국가안보에 이르기까지 각 수준에 따라 각종 위험요소로부터 보안과 안전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다고 한다.

이창길(2011)⁽⁴⁾은 생활안전 분야는 성범죄(성폭행), 교통, 청소년범죄, 직장, 가정, 금융범죄, 화재, 식품안전, 등으로 크게 구분하며, 현대사회의 특징과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가장 크게 우리를 위협하는 분야만을 한정하여 다룰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이 외에 스트레스, 스톱킹, 건강, 해외여행 등과 관련된 안전 분야라고 하면서 생활안전을 국민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주요 학자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정의는 전혀 다른 견해가 아니라 동일한 현상에 대해 각기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정의는 생활안전의 일정 분야만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생활안전의 정의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발견해야 한다. 이러한 공통 요소를 포괄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생활안전의 내용을 좀 더 실제와 유사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한 주요 학자들의 생활안전의 정의를 통합하여 생활안전을 정의하면 생활안전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환경을 위협하거나 위협할 가능성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을 받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안전에 대해 개념적인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상생활에서 위험한 장소에 출동하여 실질적인 안전을 보호하는 소방활동을 중심으로 연구를 하였다. 소방조직 내부에 생활안전대 운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국민을 대상으로 생활안전 수요를 조사하여 향후 소방조직의 생활안전 조직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2.2 생활안전소방의 필요성

현대사회의 위험은 산업화가 낳은 대량생산의 산물이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위험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산업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생활주변에서 위협하고 있다. 다양한 유형의 위험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는 새로운 위험에 대처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며 국민은 다양한 생활위험 요소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헌법은 안전에 관한 권리를 인정하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그러나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까지도 보장하고 있다. 안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국가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리고 헌법 제43조 제6항에서 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를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비롯되는 안전에 대한 위협에 집중했던 자유주의 시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유형의 위험으로 인해 국가는 새로운 위험에 대처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안전보호임무가 강조되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자유주의적 법치국가가 주목하지 않았던 생활안전의 문제가 법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헌법적 차원에서 관심 끌게 되었다.

둘째, 헌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면서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근거로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안전보호의무에 대한 내용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4항이 자연재난 뿐 아니라 인적 재난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

Table 1. Main Activities of Fire Fighting for Safety

| Area | Types of activities | Details |
|-----------------------|---------------------------------------|---|
| Activities for rescue | Location tracing through mobile phone | · location tracing for those who are liable to commit a suicide or get lost through mobile phone |
| | Simple rescue | · Opening door, removing accessories |
| | Safety measures | · Safety measure against fall of large icicle. · Safety measure against a sign and a window that are liable to fall by strong wind |
| | Animal protection | · Protection of abandoned animals, companion animals and natural monument |
| | Capture of animals | · Removing bee hive and capture of wild boar |
| | Simple first aid | · Simple first aid which is not emergency |
| Support for citizens | Water supply · power feed | · Supply of drinkable water (natural spring water) and power |
| | Drainage | · Improve drainage in preparation for flood |
| | Education of fire safety | · Education of fire safety for kindergarten students, elementary school students, middle school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and adults. · Education of fire safety relating to 119 safety service. |
| | Others | · Repair defective fire extinguishment equipment |

적 재난에 대해서만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와 보호청구권의 도출가능성을 인정하는 견해처럼, 국민의 생활안전권은 자연재난 보다는 인적 재난으로부터의 안전권이 핵심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복지국가성은 헌법 제34조에 잘 나타나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이어 국가의 사회복지 · 사회복지의 증진 노력의무(제34조 제2항),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의무(제34조 제3항), 노인 ·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실시 의무(제34조 제4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 ·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국가의 보호(제34조 제5항), 재해예방과 그 위험으로부터의 국민보호를 위한 노력 의무(제34조 제6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국가를 향한 출발은 인간의 안전한 삶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넷째, 최근 화재발생률이 줄어들고 있으며, 구조와 구급 서비스도 담보상태에 있다. 그러나 생활안전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어 소방기관이 생활안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국민의 안전에 관한 책임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다섯째, 안전문화는 조직의 모든 계층과 조직 구성원들에 의하여 조직 구성원과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우선시 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가치이며 안전을 위한 개개인의 책임에 대한 약속, 지속유지를 위한 약속, 안전관련 문제의 논의와 강화,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 실수를 기반으로 얻어진 교훈들이 포함된다⁵⁾. 안전문화가 형성되어야 안전사고의 발생률이 감소될 것이고, 이러한 안전문화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기관인 소방관서에서 생활안전에 대한 적극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2.3 소방의 생활안전 활동영역

소방기관의 생활안전서비스는 소방기관에서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활동 외에 소방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0443호, 2011. 3. 8. 공포 · 시행)됨에 따라 ‘119에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소방기본법」 제16조의2제5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생활안전서비스는 최근 급증¹⁾하고 있는 국민 생활안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조대원의 구조출동 요청 거절로 인한 민원야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비응급 생활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3. 조사설계

3.1 조사목적 및 내용

본 조사는 소방조직의 생활안전서비스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민과 경기도 소방공무원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이해 정도,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영역의 주요 설문내용은 소방조직의 생활안전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119생활안전대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인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설문조사 내용은 첫째, 119생활안전대 운영에 관한 설문으로 최근 화재건수가 줄어들고 있어 소방서비스를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에 대한 내용, 생활안전에 관한 관심이

1) 최근 3년간('09년~'11년)전체 구조 출동 대비 생활밀착형 구조출동은 평균 46.4% 차지하고 있다.

집중되고 있는 때에 다른 기관보다 발 빠르게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 소방조직에서 119생활안전대 운영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둘째, 소방조직의 효과성에 대한 설문으로 119생활안전대 활동이 소방 이미지를 제고, 119생활안전대 활동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 119생활안전대 활동으로 향후 소방정책 추진의 용이 등에 대한 내용 등이다.

3.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119생활안전대 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위한 것이므로 실제로 소방현장에서 활동하고,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소방공무원과 생활안전서비스의 수혜자인 경기도민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표본수는 1,400명이며, 표본추출방법을 경기도의 소방공무원과 경기도민 집단을 대상으로 비무작위추출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생활안전서비스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119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장위주의 소방공무원과 경기도민에 대한 조사를 설계하였다.

자료수집방법은 표준화된 질문지 즉, 질문항목, 질문형식, 질문항목의 배열순서 등 세심하게 규정한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활용하였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질문항목의 내용은 의견이나 태도는 그 내용, 방향, 그리고 강도로 표시되며, 응답자의 성향을 나타내주는 의견이나 태도에 관한 질문내용(opinion and attitude questions)이다. 질문형식은 응답자들에게 그들의 견해와 가장 비슷한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한 세트의 질문이 제시되는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질문양식(question format)은 응답자들이 어떤 태도나 대상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및 좋아하는 정도를 알고자 할 때 사용 되는 서열식(ranking)질문을 사용하였다.

조사방법은 질문서를 전달하고, 응답자로 하여금 직접

기입하게 한 다음 나중에 질문서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배포조사법을 활용하였다. 이 조사방법은 공무원 등 조사대상이 한정된 집단일 경우에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질문서의 적용방법이다⁶⁾.

3.3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는 2012년 6월 말에 실시하여 예비조사를 통해 측정지표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정을 통해 측정지표를 확정하고 연구의 설문 문항을 확정하였다. 확정된 설문항목을 바탕으로 본 조사는 2012년 7월 10일부터 25일까지 총 1,400부를 배포하여 총 1,300부를 회수하였다. 이 중 응답이 불성실한 102부를 제외한 1,198부를 유효한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수집된 데이터를 사회과학통계패키지 SPSS 15.0Window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할 때 중요한 것은 자료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수집된 자료의 전체적인 응답경향과 분포 등 특성 파악을 위해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과 평균값 분석을 통하여 전체 항목의 빈도, 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또한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119생활안전 활동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4. 연구의 결과분석

4.1 119생활안전대 운영

생활안전대 운영과 관련하여 응답분포 조사를 시행하였다(Table 2 참조). 첫째, 화재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소방행정 환경에서 소방서비스를 생활안전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가 211명(25.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87명(22.6%)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81로 소방서비스의 확대에 대해 대체

Table 2. Analysis of Operation of Safety Units

| Variables | Classification | Frequency | Percent (%) | Average | Standard deviation |
|-------------------------------|----------------|-----------|-------------|---------|--------------------|
| Expansion of everyday safety | ① not at all | 174 | 21.0 | 2.81 | 1.287 |
| | ② no | 178 | 21.5 | | |
| | ③ fair | 187 | 22.6 | | |
| | ④ yes | 211 | 25.5 | | |
| | ⑤ ver | 79 | 9.5 | | |
| Expansion of goal | ① not at all | 127 | 15.3 | 3.08 | 1.282 |
| | ② no | 147 | 17.7 | | |
| | ③ fair | 206 | 24.8 | | |
| | ④ yes | 228 | 27.5 | | |
| | ⑤ ver | 121 | 14.6 | | |
| Operation of 119 safety units | ① not at all | 177 | 21.4 | 2.85 | 1.340 |
| | ② no | 175 | 21.1 | | |
| | ③ fair | 182 | 22.0 | | |
| | ④ yes | 186 | 22.4 | | |
| | ⑤ ver | 109 | 13.1 | | |

로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응답자의 약 80%가 소방사-소방장(79.2%)이며 현장근무자(81.1%)로 과중한 업무에 인원 보강 없이 새로운 업무가 추가됨에 따른 저항의 표현으로 보인다.

둘째, 생활안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때 생활안전서비스를 타기관보다 빠르게 제공해야 한다는 질문에서 '그렇다'가 228명(27.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206명(24.8%)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3.08로 타기관보다 앞선 생활안전서비스 제공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어, 생활안전으로의 업무 확대에 대해 저항은 하고 있지만 화제가 줄어들고 생활안전업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생활안전업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방조직에서 119생활안전대의 운영에 대한 질문에서 '그렇다'가 186명(22.4%)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84명(22.0%)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2.85로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생활안전업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생활안전대를 두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4.2 생활안전서비스의 소방조직 효과성

생활안전서비스의 소방조직 효과성 즉, 소방이미지, 생활안전 도민수혜, 소방정책 추진 등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3 참조).

첫째, 119생활안전대 활동이 소방 이미지 제고에 도움을 줄 것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261명(31.5%)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다'가 240명(29.0%)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25로 119생활안전대 활동이 소방 이미지 제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119생활안전대 활동이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도움이 될 것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279명(33.7%)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다'가 246명(29.7%)으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36로 도민수혜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119생활안전대 활동으로 향후 소방정책 추진이 용이 할 것에 대한 질문에서 '보통이다'가 289명(34.9%)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그렇다'가 196명(23.6%)으로 나타났다. 평균은 3.09로 119생활안전대 활동으로 향후 소방정책 추진이 용이 할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생활안전대 운영 관련 추가 업무로 인해 현업부서 요원들 대부분이 부정적이었지만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안전업무의 필요성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 경기도민의 생활안전서비스 인식

경기도민의 생활안전서비스에 대한 인식 즉, 생활안전 인식, 생활안전대 인식, 119생활안전대 실효성, 긴급과 비긴급의 신고체계 구분 등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4 참조).

첫째, 생활안전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른다'라고 답변한 경기도민이 101명(27.4%)으로 가장 많았으며, '어느 정도 알고 있는 편이다'라고 답변한 경기도민이 85명(23.0%)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은 2.83으로 경기도민이 전반적으로 생활안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119생활안전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거의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답변한 경기도민이 96명(2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들어본 적이 있지만 잘 모른다'라고 답변한 경기도민이 90명(24.4%)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은 2.73으로 경기도민이 전반적으로 119생

Table 3. Analysis of Firefighting Policy

| Variables | Classification | Frequency | Percent (%) | Average | Standard deviation |
|-------------------------------------|----------------|-----------|-------------|---------|--------------------|
| Fire organization of images | ① not at all | 97 | 11.7 | 3.25 | 1.203 |
| | ② no | 101 | 12.2 | | |
| | ③ fair | 261 | 31.5 | | |
| | ④ yes | 240 | 29.0 | | |
| | ⑤ ver | 130 | 17.4 | | |
| Everyday safety of citizens benefit | ① not at all | 75 | 9.0 | 3.36 | 1.152 |
| | ② no | 85 | 10.3 | | |
| | ③ fair | 279 | 33.7 | | |
| | ④ yes | 246 | 29.7 | | |
| | ⑤ ver | 144 | 17.4 | | |
| Fire policy of implementation | ① not at all | 108 | 13.0 | 3.09 | 1.199 |
| | ② no | 125 | 15.1 | | |
| | ③ fair | 289 | 34.9 | | |
| | ④ yes | 196 | 23.6 | | |
| | ⑤ ver | 111 | 13.4 | | |

Table 4. Gyeonggi-do Residents of Safety Service

| Variables | Classification | Frequency | Percent (%) | Average | Standard deviation |
|--|-------------------------|-----------|-------------|---------|--------------------|
| Everyday safety recognition | ① Never even heard | 68 | 18.4 | 2.83 | 1.237 |
| | ② Almost not heard | 81 | 22.0 | | |
| | ③ Heard but do not know | 101 | 27.4 | | |
| | ④ Somewhat know | 85 | 23.0 | | |
| | ⑤ Very well know | 34 | 9.2 | | |
| Everyday safety units of recognition | ① Never even heard | 72 | 19.5 | 2.73 | 1.232 |
| | ② Almost not heard | 96 | 26.0 | | |
| | ③ Heard but do not know | 90 | 24.4 | | |
| | ④ Somewhat know | 81 | 22.0 | | |
| | ⑤ Very well know | 30 | 8.1 | | |
| Everyday safety units of effectiveness | ① No help is will be | 9 | 2.4 | 3.66 | 1.031 |
| | ② Will not help. | 37 | 10.0 | | |
| | ③ Will help a little. | 115 | 31.2 | | |
| | ④ Will help so much | 118 | 32.0 | | |
| | ⑤ Will very helpful. | 90 | 24.4 | | |
| 119 Call system of division | ① not at all | 9 | 2.4 | 3.84 | .993 |
| | ② no | 25 | 6.8 | | |
| | ③ fair | 66 | 17.9 | | |
| | ④ yes | 186 | 50.4 | | |
| | ⑤ very | 83 | 22.5 | | |

화안전대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119생활안전대가 실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기도민이 118명(32.0%)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경기도민이 115명(31.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은 3.66으로 경기도민들이 전반적으로 119생활안전대가 실생활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긴급상황과 비긴급상황에 대해 신고체계를 구분하는 것이 좋을지에 관한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답변한 경기도민이 186명(50.4%)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경기도민이 83명(22.5%)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은 3.84로 경기도민들이 전반적으로 신고체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참조).

4.4 경기도민의 생활안전 소방정책 인식

경기도민의 생활안전 소방정책에 대한 인식 즉, 소방차량 양보, 안전문화 조성, 소방정책, 생활안전 홍보 등에 대한 응답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Table 5 참조).

첫째, 119생활안전대의 차량이 출동할 때 차량을 양보하는 편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답변한 도민이 146명(39.6%)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도민이 125명(33.9%)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은 3.98로 도민은 전반적으로 119생활안전대 차량 출동 시 차량을 양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119생활안전대가 출동할 때 도민이 차량을 양보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평균이 2.21(Table 5 참조)로 나타나 도민과 소방관들의 인식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도민이 양보를 하려하나 정해진 제도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지 못해 실질적으로 소방관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양보를 해주지 않는 소수의 시민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차량 양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차량 지연율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119생활안전대의 활동이 도민의 안전문화조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답변한 도민이 172명(46.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렇다’라고 답변한 도민이 99명(26.8%)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은 3.73으로 도민들이 전반적으로 119생활안전대 활동이 도민의 안전문화조성에 주는 도움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119생활안전대의 활동으로 향후 소방정책 추진이 용이하게 될지에 관한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답변한 도민이 163명(4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통이다’라고 답변한 도민이 116명(3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균은 3.66으로 도민들이 전반적으로 119생활안전대 활동이 향후 소방정책 추진에 용이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119생활안전대 활동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그렇다’라고 답변한 도민 177명(48.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그렇다’라고 답변한 도민이 83명(22.5%)으로 그 뒤를 이었다. 평

Table 5. Fire Policy Recognizes

| Variables | Classification | Frequency | Percent (%) | Average | Standard deviation |
|-----------------------------|----------------|-----------|-------------|---------|--------------------|
| Vehicle concessions | ① not at all | 9 | 2.4 | 3.98 | .965 |
| | ② no | 16 | 4.3 | | |
| | ③ fair | 73 | 19.8 | | |
| | ④ yes | 146 | 39.6 | | |
| | ⑤ very | 125 | 33.9 | | |
| Safety culture formation | ① not at all | 10 | 2.7 | 3.73 | .917 |
| | ② no | 20 | 5.4 | | |
| | ③ fair | 99 | 26.8 | | |
| | ④ yes | 172 | 46.6 | | |
| | ⑤ very | 68 | 18.4 | | |
| Firefighting policy | ① not at all | 6 | 1.6 | 3.66 | .883 |
| | ② no | 25 | 6.8 | | |
| | ③ fair | 116 | 31.4 | | |
| | ④ yes | 163 | 44.2 | | |
| | ⑤ very | 59 | 16.0 | | |
| Life safety media relations | ① not at all | 7 | 1.9 | 3.83 | .912 |
| | ② no | 23 | 6.2 | | |
| | ③ fair | 79 | 21.4 | | |
| | ④ yes | 177 | 48.0 | | |
| | ⑤ very | 83 | 22.5 | | |

Table 6. Priority Analysis of the Life Safety Services

| Division | Urban | | Urban and rural complex | | Rural | | Industrial urban | |
|------------------------------|-------|--------|-------------------------|---------|-------|---------|------------------|---------|
| | Score | Raking | Score | Ranking | Score | Ranking | Score | Ranking |
| Simple rescue | 18.8 | 2 | 10.3 | 2 | 16.8 | 2 | 8.6 | 2 |
| Safety measures | 38.3 | 1 | 26.5 | 1 | 31.1 | 1 | 14.3 | 1 |
| Animal protection | 5.9 | 8 | 5.5 | 5 | 3.3 | 8 | 3.4 | 8 |
| Capture of animals | 8.6 | 7 | 7.9 | 3 | 11 | 3 | 4.4 | 6 |
| Simple first aid | 8.9 | 6 | 6.4 | 4 | 7.6 | 4 | 3.5 | 7 |
| Water and electricity supply | 11.4 | 4 | 5.3 | 6 | 6 | 6 | 5.2 | 4 |
| Drainage | 9.5 | 5 | 5.3 | 6 | 4.4 | 7 | 5.3 | 3 |
| Education of fire safety | 11.9 | 3 | 5 | 8 | 6.1 | 5 | 4.5 | 5 |
| Others | 4.6 | 9 | 3.4 | 9 | 1.9 | 9 | 1.2 | 9 |

균은 3.83으로 도민들이 전반적으로 119생활안전대의 활동내용을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해야 하는 것에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참조).

4.5 경기도민의 생활안전서비스 우선순위 분석

소방조직의 생활안전에 대 중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민설문을 통한 119생활안전 활동의 우선순위 분석내용을 보면 Table 6과 같다. 도시, 도농복합, 농촌, 공업도시 모두 1위와 2위가 안전조치와 단순구조로 동일하였으나, 3위의 경우 도시 는 소방안전교육(11.9점), 도농복합은 5점 이었다. 이는 최근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것에 대한 사회적 반향을 볼 수 있다. 도농복합은 동물포획(7.9점), 농촌은 동물포획(11점), 공업도시의 경우 배수(5.3점)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안전업무에서 위험물 제

거 등의 안전조치와, 장신구 제거 등의 단순구조는 지금까지 소방조직에서 처리해 온 업무로 인식되어 선택된 것으로 보이고, 3순위의 경우 도시별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도시의 경우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 안전교육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도농복합과 농촌의 경우 개발된 지역이 상대적으로 적고 녹지지역이 많은 지역의 특성상 동물포획을 택하고, 공업도시의 경우 산업체가 많 이 몰려있어 침수지역의 배수지원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소방공무원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생활안전대 업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생활안전 서비스가 소방조직의 이미지를 제고시킬 것에 대한 인식은 매

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장에서는 선행연구, 소방공무원의 설문조사, 도민의 설문조사 등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생활안전 소방서비스 방안을 제안하겠다.

첫째, 생활안전은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안전을 보장 받는 것으로 정의 한바 있다. 생활안전의 특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위해요소는 있으나, 처리에 급박성을 요하지 않는 비용급·준긴급성이다. 따라서 약간의 기술과 전문성이 있다면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최근 지역사회 공동체생활의 문제 해결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⁷⁾. 소방조직도 생활안전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생활안전서비스가 도민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지역사회의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형태의 “시민생활안전대”(가칭)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원봉사자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 통제, 개선하는 일에 종사하고 참여활동에 대한 보수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개인이다⁸⁾.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8조를 살펴보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 활동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지역의 의용소방대원, 퇴직소방공무원 및 소방 관련 학과 학생을 시기별·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소방대원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둘째, 유관기관 협력관계의 구축과 시민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생활안전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 대중매체나 시민의 관심은 새로운 문제에 쏠리기 쉬우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래된 정책에 대한 관심은 희박해지기 마련인데, 이러한 시민의 관심과 지지는 소방정책의 집행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방정책의 집행자는 시민의 지지와 관심을 얻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최대한 활용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알려줌으로서 예산, 기술 등의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생활안전 서비스는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고,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소방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생활안전서비스를 위해서는 시민 요구와 의견이 반영되고 시민사회의 적극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⁹⁾.

셋째,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유관기관은 응원협정을 통해 다조직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협력의 법적 근거는 소방기본법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상호 응원협정이 있다. 유관기관 응원협정은 각종 생활안전사고 발생시 상호 인력과 장비 등 자원을 응원하여 각종 생활안전사고의 대형화를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유관기관 응원요청 및 지원 사항은 각종 생활안전사고 현장에서 다조직간의 협력활동이다¹⁰⁾.

넷째, 119신고시스템을 긴급신고와 비긴급신고로 구분하여 민원안내, 동물구조, 단순 문개방 등 비긴급 신고를

전담하여 화재 등 긴급한 출동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민의 설문조사에서 긴급상황과 비긴급상황에 대해 신고체계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인식(평균 3.84)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최근 사회계층의 양극화, 노령인구 증가, 다문화 가정 등장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인해 사회안전망이 위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생활안전소방서비스가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연구의 표본집단이 경기도민과 경기도의 소방공무원으로 한정되는데서 오는 표본 집단의 대표성 문제와 표본선정 시 생활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조직이 배제되어 있어 다양성에서 오는 표본 집단의 횡단적 특성이 제기 될 경우 연구결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제한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13년도 강원대학교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J. Chae and S. C. Woo, “An Analysis of the Factors Affecting the Fire Fighting Organiz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 8 No. 1, pp. 39-40 (2012).
2. J. E. Lee and H. J. Yoo “Creating the New Field of the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and Its Operating Strategy”,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 3 No. 2, pp. 4-5 (2007).
3. D. S. Bae, “Strategies for Establishing Crisis Management Service System for the Safe Campus”,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 5 No. 1, pp. 6-8 (2009).
4. C. K. Lee, “A Study for the Standardization an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he Life Safety”,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Vol. 7 No. 1, pp. 24-27 (2009).
5. D. Wiegmann, H. Zhang, T. von Thaden, A. Gibbons and Sharma,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yion of a Safety Culture Survey for Commercial Aviation”,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Technical Report, University of Lllinois at Urbana-champaign, pp. 12-28 (2003).
6. K. K. Nam, “Resaech Method for Public Administration”, Bobmunsa, p. 387 (2007).
7. H. M. L. Hong, “Comparative Study on Community Organization Practice in the Urban Communities of the Low-Income Class”,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Eha Women’s University Phd, pp. 39-43 (2005).

8. Gordon Manser, Rosemary Higgins Cass, "Voluntarism at the Crossroads", Family Service Association of America p. 11 (1976).
9. J. Chae and S. C. Woo, "The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Effectiveness of Disaster Management in Governanc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Fire Science & Engineering, Vol. 23, No. 4, p. 89 (2009).
10. J. Chae, "An Analysis of Disaster Management Cooperation System of Multi-organ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46, No. 1, p. 76 (2012).